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4월 26일 06시 32분



## 신규등록

### ☑ 구비서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수수료
사업장(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)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(다만,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)	20,000원
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	
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(매매업의 경우 제외)	
사업계획서 1부(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 포함,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)	

## 변경등록

### ☑ 구비서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수수료
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	13,100원
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	

## 양도·양수

### ☑ 구비서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수수료
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	12,000원
양도·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	
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	
「자동차관리법」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양도·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)	

## 휴·폐업

### ☑ 구비서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수수료
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(폐업인 경우에만 첨부)	없음

## 차령연장

### ☑ 구비서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수수료

<p>「자동차관리법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경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(일반택시운송사업자,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)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</p>	<p>없음</p>
<p>자동차등록증 1부</p>	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